순경 · 경장, 승진 근무연수 단축

경찰 승진임명규정 개정안 7월초 시행

순경·경장 등 하위직 경찰관이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 근무연수가 짧아지고 범인검거에 공을 세워 특진할 때는 최소 근무연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최근 경찰청은 경찰의 사기 진작과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명규정 개정해 승진근무연수 단축은 내년 1월부터, 특진근무연수 제한을 없애는 것은 오는 7월 초부터 각각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순경→경장, 경장→경사로 진급하는 데 필요한 최소 근무연수가 현재 각각 2년에서 1년으로 짧아지고 범인검거로 공을 세워 특진할 때는 최소 근무연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업무성과가 좋으면 1년만에 순경에서 경사로 2계급 진급할 수도 있어 순경이 경찰서장급인 총경으로 진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4~5년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초 총경 승진자의 25%를 순경 출신에 배당하는 '총경 할당제'를 도입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은 9급에서 6급이 되는 데 보통 17년이 걸리는 반면 경찰은 순경에서 6급인 경감까지 승진하는 데 27년이 걸린다』며 『경찰관 사기를 높이고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승진 규정을 고쳤다』고 언급했다.

경찰 일반 직무 수행중 순직 · 공상도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경찰청은 최근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 국가배상 청구가 불가능했던 경찰관도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종전 국가배상법은 군인·경찰관 등이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로 포괄적으로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 없는 일반 직무집행 중 순직·공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

경찰관의 경우 순직이나 공상을 당하는 경우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없는 일반 직무집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포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그 동안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으로 근무중 순직·공상을 당한 수많은 경찰관들이 自費로 치료하거나 동료와 법정에서 소송을 벌이기도 하고, 젊은 직원들의 순직에 따른 보상금이 너무 적어 유가족의 생계도 보장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왔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은 기본권 제한범위를 크게 축소함으로써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직무집행 중 발생한 순직·공상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가능성을 열었고, 같은 규정에 근거한 관용 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제3조 역시 개정하게 되어 경찰공무원이 순찰차량에 탑승하다 전투·훈련 등 직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직무집행으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앞으로는 보험보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뉴스브리핑

경찰 관행 용어 수정

검찰 수사지휘관련, 대등한 용어로 변경

그 동안 경찰이 검찰에 수사지휘를 받으면서 사용해온 문구를 대등한 기관간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말로 바꾸기로 했다.

최근 경찰청이 일선 지방경찰청에 지시한 관행적 수사용어 개선 내용을 보면 '기소하심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사건 이송함이 옳다고 생각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인계코져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을 '기소 의견임', '사건 이송 의견임', '사건 이송 신청함' 등으로 줄임말로 바꿔 사용키로 했다.

또 '긴급체포하였기에 승인하심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송치코져 하오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소(혐의없음)로 송치코져 하오니 지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도 '긴급체포함', '불기소 또는 송치 의견임' 등으로 바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관행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시대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변경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음놓고 학교가기 범국민 결의대회

경찰청, 학교폭력근절 지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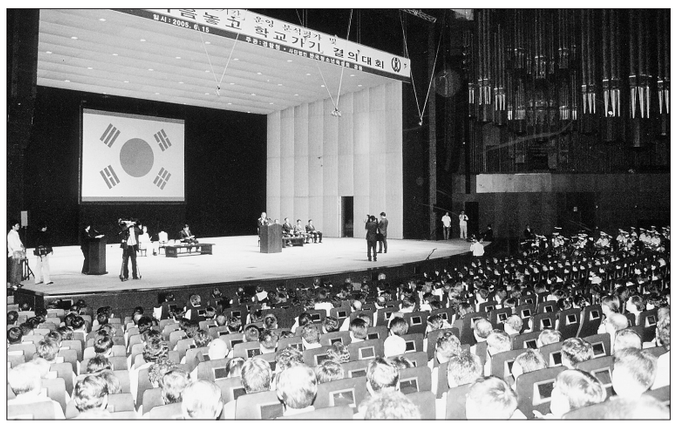

경찰청은 최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와 공동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운영 평가보고 및 마음놓고 학교가기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허준영 경찰청장, 최영희 청소년위원장,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문상주 한국청소년육성회 총재, 시민단체와 명예경찰 소년단 등 3,000여명이 참석하여 「마음놓고 학교가기」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허준영 경찰청장은 폭력서클 10개파 215명을 자진신고 유도로 해체시킨 강남서 형사과 박호상 경사를 경위로 특진시키는 등 학교폭력 근절 유공자 6명을 특진임용하고 7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허 청장은 式辭에서 "임기동안 마음놓고 학교가기 치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6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관련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집중단속기간을 설정,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勤續 20년미만 殉職 공무원도 年金 지급

행자부, 순직공무원 보상특례법 입법 추진

공무원이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고도의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후 3년내 사망할 경우 앞으로는 근속 연수 20년 미만이어도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순직해도 유족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순직공무원 유족에 대한 순직 유족연금의 경우 전체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이나 사망 당시 순직 공무원의 보수월액 중 많은 것을 기준으로 근속 20년 미만에는 55%가, 20년 이상에는 65%가 각각 지급된다.

또 유족연금과 별개인 일시 보상금도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54배(현재 36배)로 대폭 오르며, 특히 대간첩작전에 투입된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군인과 형평을 맞춰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현재 순직자 보수월액의 36배)가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이제 막 경찰에 들어온 순경 2호봉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할 경우 현재는 유족연금 없이 보상금 3천 500만원만 받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보상금 5천만원에 매달 111만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또 보상심사를 하는 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순직공무원과 유가족에게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할 방침인데, 이 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빵소니 사고 쉽게 해결한다

경찰청, 추적 전산시스템 본격 가동

경찰청이 최근 빵소니 사고 피의자 검거를 위한 자동차부품 데이터베이스(DB) 전산화 작업이 끝남에 따라 17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조등, 후사경, 방향지시등, 차폭등, 안개등, 라디에이터 그릴, 사이드 미러 등 빵소니 사고를 낸 차량이 현장에 남긴 부품의 종류와 일련 번호를 추적해 자동차 제조업체와 차종, 생산시점을 알아냄으로써 용의차량을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찰은 타이어 관련 정보도 DB로 만들어 사고현장에 부품이 남지 않아도 스키드마크(급정차 때 도로표면에 생기는 타이어 흔적)나 피해자의 옷에 남은 바퀴 자국 모양을 분석해 가해차량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이와관련 자동차 부품업체 101곳, 정비업체 3만277곳, 부품 판매점 3천413곳, 자동차 제원 정보 6만1천163건, 부품 정보 1만1천223종, 타이어 정보 1천52종의 정보가 전산화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인적이 드문 곳이나 밤 시간에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나도 범인을 검거하기가 훨씬 쉬워졌다면서 『이 시스템 도입으로 현재 79% 수준인 빵소니 교통사고 피의자 검거율이 90%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감찰활동 과감히 공개한다

경찰청, 시민감사위원회 발족

경찰청은 6월 9일(목) 11시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내부감찰 활동과정에 외부인사를 참여케 함으로써 감찰업무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투명한 감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각계 각층의 저명인사 8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위원장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와 위원으로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박정규 변호사, 조선일보 강천석 논설주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인 명진 스님, 강남대 윤신일 총장, 이상호 우리들병원 이사장,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 연맹 중앙회장, 유경선 유진기업 대표이사를 위촉하는 등 덕망있고 존경받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시민감사위원회는 분기에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뿐 아니라 주요 사안 발생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감찰 감사 업무의 기본방침과 계획 및 그 추진방안 그리고 주요비위사건의 조사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권고하면 경찰청장은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통화대기음에 수사권 조정 홍보문구 삽입

전국 251개 경찰관서 전화대상

경찰청은 전국 251개 경찰관서의 경찰전화 및 민원대표 전화에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통화대기음을 넣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통화대기음에는 '수사권 조정은 민주사회의 시대적 요청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도 선진경찰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 60년을 맞은 우리는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으로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이 되겠습니다'란 내용이 들어간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때까지 이같은 내용의 통화대기음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公 告

직원 및 업무용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비점검을 실시하니 각과에서는 기일내에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가. 정비점검 일시 및 장소

1) 2005.07.04(월)~07.07(목) 4일간
- 07.04(월) : 대우, 기아
- 07.05(화) : 대우, 기아, 삼성
- 07.06(수) : 현대, 쌍용, 삼성
- 07.07(목) : 현대, 쌍용

2) 장 소 : 경찰청 배차실옆 간이정비센타

나. 대상차량
- 각과 직원 개인차량(승용차)
- 각과 업무용차량, 외청 및 특수업무용차량
- 집중관리차량

경 찰 청

경우신문 원고 모집
02-2234-1881

〈1면에 이어〉 - 경찰의 수사주체성 명문화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홍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각각 의원 17명과 87명이 서명한 가운데 법사위에 회부된 상황이며, 무소속인 신국환 의원도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법개정과 관련한 기획단 구성을,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회내에서도 경찰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소법 개정 문제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편 지난 달 28일 임명된 천정배 신임 법무장관은 개각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은 검찰이 국민들에게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스스로 권력을 통제하고 자제할 때는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결정 하겠다』며 『그 문제는 국회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재향 경우회는 지난 6월 20일자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에 120만 경우의 이름으로 『이제는 일본 군국주의 시대의 검사독점적 수사구조에서 벗어나 선진국형의 檢·警 수사권 공유체제로 발전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제의 잔재인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 하며,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사분권은 세계적 추세이니 만큼 더 이상 자질문제, 인권보호라는 구실로 경찰 수사권 현실화를 늦출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전국의 경우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사권 분권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인기 의원안'과 '홍미영 의원안' 비교

공 통 점

- ㅇ 경찰수사의 주체성 인정, 경·검간의 지휘관계를 협력관계로 전환
- ㅇ 검찰에 공소유지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 제정권을 추가 부여
- ㅇ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치 않고, 사건송치의무를 규정

차 이 점

항목	이인기 안	홍미영 안
사법경찰관 범위의 탄력적 규정 여부	- 도서·벽지 등 경찰서와 격리, 사법경찰관이 배치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이:195② 단서) - 예외적으로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수사권한을 행사, 도서·벽지에서도 수사절차의 공백이 없도록 함	-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범위를 현행법과 같이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함(홍:195②)
검사의 수사지휘 남용가능성 제한 여부	- 검사에게 일반적 기준 제정권·보완수사 요구권을 허용시, 개별 검사에 의한 구체적 사건 지휘, 수사기준의 통일성 저해 등의 우려가 있어, - 일반적인 기준은 검찰총장이 정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은 허용치 않음(이:196②)	- 검사에게 일반적 기준 제정권·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홍:196②,④)
전건송치 주의의 예외 존부	- 전건 송치에 대한 예외로서, 경미범죄 등 송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범위에서 불송치대상으로 하여,(이:196조의2단서) -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 형사절차 효율성(즉결심판제도 폐지 감안)을 제고함	- 예외없는 전건송치주의 규정(홍:196③)
현행 196③ 존치 여부	현행 제196조 제3항과 같이, 다른 법률에서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함(제197조에 의거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는 등 굳이 위임규정을 둘 실익이 없으며, 일본도 이와 같음)	- 다른 법률에서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존치(홍:195③)
경찰법 개정 여부	없 음	- 상관의 부당지휘에 대한 이의제기권 신설(경찰법 제24조)

檢·警 수사권 分權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 합시다

지난 5월 17일 제 29차 정기 총회시 檢·警 수사권 분권을 위한 서명운동을 긴급안건으로 채택하여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그 취지문과 서명부를 전국 경우회에 보내 드린 바 있고 120만 회원의 이름으로 중앙일간지에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국가와 경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래 서명부에 서명 후 절취하여 빠른 시일내에 우송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절 취 선 ----------

연번	성 명	주 소	서 명	비 고
1				
2				
3				
4				
5				

※보내실 곳 : 서울 중구 신당동 171번지 대한민국재향경우회